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12 중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영 제12조의7제2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검사관”을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관”을 각각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관”을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 중 “검사관”을 각각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업자 및 종업원”을 “영업자”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9조제10항 및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9조제10항 및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9조제10항 및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0조의2 각호 이외의 “영업자 및 종업원”을 “영업자”로 하고 같은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제6항 중 “제5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말한다) 및 위생화”를 “말한다)·위생화 및 마스크”로 하고, 같은항제3호 중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및 “1년간”을 각각 “종업원(집유업의 경우에는 검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과 “2년

간”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달걀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3)의 지육의 대상질병란 중 “고름형성(화농성) 기관지폐렴”을 “고름형성(화농성) 병변”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하) 중 “검사관실”을 “검사관실(검사원 업무 공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은 제3호가목7)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10 제6호거목 중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1)

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가)(1) 중 “제21조제8호나목”을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같은조제8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가) 중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각각 “전기냉장시설”로 하며, 같은 가) “비치해야 한다. 다만,”을 “비치해야 하며,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구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1) 가) 중 “제21조제8호나목”을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같은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3)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 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포장육·수입육을 가공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에 다목 및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1) 물세척시 제조·가공 기준에 따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2호나목4)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과 라목을 각각 라목과 마목으로 한다.

다.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면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3호가목4)의 위반행위란 중 “제1호차목·카목”을 “제1호차목·카목·타목”으로 하고 같은목의 표 제13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의2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자목 또는 차목”을 “제3호의2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타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호와 제14호의3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6호와 제16호의3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목의 표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표 제16호의2(중전의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15.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			

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의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법 제27조제1 항제4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으로서”를 “경

우로서”로 하고, 같은 목의 표 제11호가목4) 위반행위란 중 “제1호차목
· 카목”을 “제1호차목 · 카목 · 타목”으로 하고,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2) 위반행위란 2) 중 “제1호사목 · 아목”을 “제1호사목 · 아목
· 자목”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1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제1호사목 · 아목”을 “제1호사목 · 아목 · 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가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에서 (8)을 각각 (6)에서 (9)로 하
고 같은호마목 중 “너목”을 “더목”으로 한다.

(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 제1호사목 본문 중 “종업원”을 “종업원(집유업의 경우에는 검사
원을 포함한다)”으로, “매월 1시간”을 “매년 1시간”로, “1년간”을 “2년
간”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간 및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다.

별표 12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절
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
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
과 구별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3호의2다목 중 “식용란을 폐기하는 때에는”을 “식용란은 폐기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검란하여야 한다”를 “중량선별
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검란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자신이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1호 및 제3호머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4호카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육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3) 및 (4)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 및 (2)에 따른 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2 제4호카목(3) 중 ““급식조리용”을 “조리용”으로, “소비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급식조리용”을 “조리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영업자는 제13조”를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1)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이 아닌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제13조”로 하고,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본문 중 “매월 1시간”을 “매년 1시간”로, “1년간”을 “2년

간”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간 및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3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너목 전단 중 “집단급식소”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하여야 하고,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자. 영업자는 냉장육의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절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냉동육과 구별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6) 전단 중 “한다. 이 경우”를 “하고,”로 하고,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폐기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4호카목 중 “식육·포장육”을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으로, “이력번호”를 “이력번호(식육·포장육에 한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식육 및 포장육”을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전단 중 “집단급식소”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하여야 하고,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업자”로,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를 “식육 및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이거나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14의3 제1호바목 중 “패류 독소기준”을 “패독소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을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자.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하.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 멜라민,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10%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머.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16 표 2호나목, 다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30	60	9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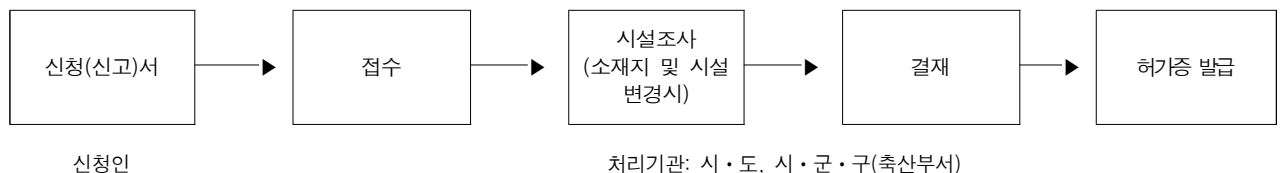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营业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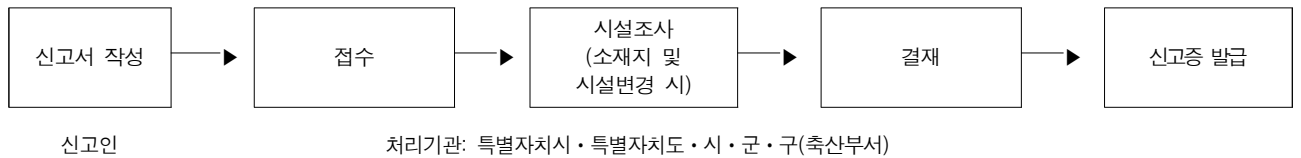
별지 제27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과 뒤쪽을 다음과 같이 같이 한다.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살균·멸균 제품 해당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 고열량·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영양성분조절 제품 [], 경도조절 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없음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9		
2			20		
3			21		
4			22		
5			23		
6			24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14			32		
15			33		
16			34		
17			35		
18			36		

(영양성분 정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 경우)

No.	영양성분	단위	No.	영양성분	단위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기타	

총 내용량 또는 100g(ml) 또는 단위 내용량 ○○ g(ml)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율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별지 제42호서식 작성요령 중 제5호“식용정보란”을 “식용란정보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 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 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5. <삭 제>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12(닭·오리의 식육 비포장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조의12(닭·오리의 식육 비포장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5호----- 제6호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생략)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u>	② <u>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u>

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 ① (생 략)
-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
- ③ -----
--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

-----.
- ④ -----

-----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

1. -----

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생략)

3. 제50조의2제8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3. (생략)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 <단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1. (현행과 같음)

2. -----

영업자-----

-----.

3. (현행과 같음)

<삭제>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
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

------(식용란선별포장
업의 영업자가 법 제30조제3
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9조제10항 및 제7조의4제1
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
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생략)

③ · ④ (생략)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
사를 하는 종업원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 (식육포장처리
업의 영업자가 법 제30조제3
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
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
육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9
조제10항 및 제7조의4제1항제
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

영업자-----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별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

⑥ ----- 제5항까지-----

-----.

제61조(별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말한
다 · 위생화 및 마스크-----

3. -----

----- 종업원
(집유업의 경우에는 검사원을

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u>1년간</u> 보관 하지 아니한 자 4. ~ 8. (생 략)	<u>포함한다)</u>에 대하여 매년 --- - ----- <u>2년간</u> ----- ----- 4.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59